

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43호(2006. 7. 13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-58호(2006. 8. 24.)로 지형도면 작성되어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30호(2015. 2. 12.)로 최종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-65호(2007. 9. 3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52호(2015. 3. 19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고사·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3.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14)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701-513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7월 20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1)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명 칭 :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1)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임경환)

2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5, 2동 3층 302호(전화:02-701-5133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0개월(변경있음)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07. 9. 3.(변경없음)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(변경없음)

사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아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없음)

자.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차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

1) 사업시행기간 연장

- 변경내용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개월 → 240개월(증 60개월)

- 변경사유 : 조합과 미협의를 3명에 대하여 조합원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공고 하는 등 향후 관련절차를 진행하기 위함

2) 자금계획 변경 : 현재는 변경없으나, 2022년 11월 5일 정기총회시 보류지 확보 및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,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통해 확보할 예정